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. 4. 12 선고 2021가단21629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강경철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2. 3. 22.

판 결 선 고 2022. 4. 12.

주 문

1. 피고와 B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
4. 1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7,816,25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7,816,2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기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하여 11,937,0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

이외에는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: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제1항

3. 일부 기각부분

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,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며,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(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 범위를 원고의 채권액인 7,816,258원의 범위 내로 인정한다.

판사 정왕현

별지